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한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제목 :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21. 2. 25. ~ 2021. 3. 12. (16일간)
-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대상자(보조사업자) : 대*팔*신문 (대표: 소*운)
 - 송달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 (읍내동)
 - 처분사유 :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환수처분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 금6,876,105원(금육백팔십칠만육천일백오원)
 - ② 3년간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전화 담당자 박소영 ☎ 053-665-2166

2021. 2. 24.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